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30
----------	-------

발의연월일 : 2026. 1. 2.

발 의 자 : 박지혜 · 최혁진 · 김태선

박 정 · 맹성규 · 이용우

진성준 · 강준현 · 권향엽

위성곤 · 이재관 · 이병진

김영환 · 박균택 · 정진욱

문정복 · 정일영 · 박용갑

임미애 · 장철민 · 윤준병

의원(21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음. 그 결과 냉 · 난방 등 기본적 에너지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후주택, 저효율 난방설비, 고비용 연료 의존 등이 결합된 에너지 빈곤 문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제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단기적 현물지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에너지효율 개선이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설치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체

제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관련 법·정책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에너지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에너지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며, 현물지원·효율개선·요금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득 수준, 장애 여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에너지 접근 소외 지역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장기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에너지이용권 지급, 냉난방 환경 개선, 고효율 제품 보급, 재생에

너지 보급, 에너지요금 경감 등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마.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별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사. 부정수급을 조사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안정적·효율적·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빈곤”이란 가구의 소득, 주거 여건, 에너지 가격,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에너지취약계층”이란 소득 수준, 주거 여건,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빈곤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거나 실제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람

라. 제7호에 따른 에너지접근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에너지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이란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를 말한다.
5.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에너지공
급자가 수행하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사업을 말한다.
6. “에너지이용권”이란 에너지취약계층이 에너지공급자로부터 냉방
·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7. “에너지접근 소외지역”이란 도시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 공급이
제약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는 지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에너지 비용 지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보급 등 지속가능성 확보를 균형 있게 추진한다.
2.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며, 관련 법률 및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한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4.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인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때 에너지취약계층의 특성과 지역별 에너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에너지취약계층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에너지취약계층 실태조사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대상·규모 및 주요 내용
4.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운용 방안
5. 에너지취약계층 시설의 확보 및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정보 제공, 교육·홍보 및 지역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현황 및 비용 부담 등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추진체계

제8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 ① 에너지취약계층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후임자가 지정될 때까지 임기가 유지된다.
2. 에너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에너지취약계층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지방 협력체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효과적 운영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에너지취약계층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 공유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현장의 문제점 및 지원 수요에 대한 협의
3.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의 발굴 및 추진 방안
4.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데이터·기술 지원 체계의 정비
5. 그 밖에 협력 강화를 위하여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회의 절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급자(이하 “지원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 지원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등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

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권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격관리) ① 지원기관등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 에너지공급자,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 및 가구 구성에 관한 사항
2.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및 납부 현황
3.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공급·이용 현황
5. 거주지의 에너지이용 설비 현황
6. 그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지원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등은 직전 연도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해당 연

도에도 동일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자동 선정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 자료 요청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자동 선정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① 지원기관등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 지급
2. 냉난방 환경 개선
3.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제품 보급
4.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5.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
6.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7. 에너지 안전 이용 환경 조성
8.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이용 교육·홍보
9. 연료 전환 지원
10.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11.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른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지공급자에게 보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경영상태, 시공경험 등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적격 여부 심사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④ 지원기관등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 지원체계 구축) ① 지원기관등은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신청·상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대해 일괄 공고·접수 및 통합된 현장 방문·점검 체계의 마련
3.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관등을 위한 통합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통합 설명회 또는 교육의 실시
5. 지원 사업의 설계 및 개선 과정에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참여 절차의 마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의 연계, 표준화된 자료 관리, 시스템 간 연동 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통합 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 참여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간 기업, 비영리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에너지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기술 또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마련하

고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조치

2.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치
3. 민간 부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조치
4. 그 밖에 민간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에너지 또는 복지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기관
3.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사업의 성격, 기관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지정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에너지취약계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 정지가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에너지취약계층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사업 정지의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1. 에너지취약계층의 식별 및 지원 이력에 관한 정보
2. 에너지이용권의 지급 및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
3. 냉난방 환경 개선, 고효율 제품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 결과에 관한 정보
4. 에너지요금 경감 및 비용 보전에 관한 정보
5. 에너지취약계층지원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연계·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수급의 금지 및 조사) 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공급자가 자료 요청이나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이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 및 부정수급 유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정수급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지원기관등은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공급자가 부정수급액을 회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받은 날부터 회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등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 에너지요금에 합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등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에너지이용권 지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회수의 대상·범위·방법 및 제재 조치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을 통한 지원) 정부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 또는 출연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금 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2.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에너지취약계층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부과 대상, 부과 기준, 금액 산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전에 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그 밖에 에너지취약계층지원사업의 실시에도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기존 수혜자

의 자격이 급격히 상실되어 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